

#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25
----------	-----

제출연월일 : 2007. 5. 4.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별표 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2호가목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으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1 주 제6호중 “폐기물 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2제2호가목 및 별표 3제2호아목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p> <p>자동차폐차업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제7조 관련)</p> <p>1. (생략)</p> <p>2. 작업기준</p> <p>가.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 하는 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u> <u>관리법</u>에 의하여 가스자동차의 폐차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 할 것</p> <p>나.~사. (생략)</p>	<p>【별표 2】</p> <p>자동차폐차업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제7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p> <p>2. 작업기준</p> <p>가. ----- -----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u> <u>사업법」</u> ----- ----- ---</p> <p>나.~사. (현행과 같음)</p>

## 관계 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등)** ①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환경오염·주변여건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으로 본다.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관리자)** ①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제조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者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⑦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제6항의 规定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안전교육)** ①사업자등·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수탁관리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자등·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수탁관리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안전관리자) ①사업자등과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사용 시설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당해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1999.2.8,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日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1995.8.4,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과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⑤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당해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9.2.8>

⑥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⑦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제31조 (안전교육) ①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②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교육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1999.2.8>

③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 대전광역시지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 보고서

2007년 5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 I . 심사 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5월 4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2007년 5월 7일

3. 상정일자 :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7. 5. 22)상정, 심사,  
원안가결

### II .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국장 차준일)

####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인용조문을 정의함(안 별표2)

###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 장예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법명을 일치하도록 하고 제명의 띄어쓰기 등 표기방법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 안 별표 2에서는 인용조문을 정비 함.
- 안 제1조, 제6조, 별표 1, 별표 2, 제명에서는 법제처 표준 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 낚표 등을 정비 함.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9. 10. 8 제정되어 운영해 오는 조례로서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 2003. 9.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내용에 대하여 법령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표준 안 기준에 부합되도록 제명, 띄어쓰기, 낚표 등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IV. 질의·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생략**

###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